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구)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분양전환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 및 부적격에 의한 공가잔여 일반세대 118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입니다.

공급개요

- 공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파크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19층, 8개동, 총 468세대
 중 우선 분양전환 등 350세대를 제외한 118세대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표기 : **당첨예정자** / 팔호 : (예비대상자)

구분		59A	59B	59C	75A	75B	75C	84A	84B	84C	계
장애인	경기도	1(5)							1(5)		2(10)
	서울특별시		1(5)							1(5)	2(10)
	인천광역시			1(5)							1(5)
국가유공자					1(5)					1(5)	2(10)
장기복무 제대 군인						1(5)					1(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5)				1(5)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2(10)
소계	1(5)	1(5)	1(5)	1(5)	1(5)	1(5)	1(5)	1(5)	2(10)	2(10)	11(55)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정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일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구 분	신청 접수일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2.9.23 (금) 예정	• 분양문의 : 1660-3877 (09:30 ~ 17:30)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10.4 (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9:00~17:30) •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10:00~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22.10.14 (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반월자이 더파크

문의 1660-3877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

구분	비고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의 경우는 제외)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소형 · 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내 중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 및 계약체결 불가]</p>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저축 불필요)			
자격요건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 기관부서	구분	해당기관	연락처		
	국가 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청 복지과	031-259-1783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1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4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961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분양사무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분양사무소)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특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사무소 청약 접수 시 제출)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탏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월자이 더파크 투시도



※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월자이 더파크 단지배치도



※ 상기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 반월자이 더파크 108동 102호
분양 문의	1660-3877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xi.co.kr/bwt (9월중 오픈 예정)

